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7.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0월 30일, 안도걸의원 등 16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0월 3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 3. 2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6. 4. 1.) 상정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6. 4. 15.) 상정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6. 4. 22.)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 5. 19.)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안도결의원)

현행법은 발전사업자, 송전사업자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등만을 전원개발사업 시행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복수의 전기사업자가 공동접속설비를 구축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경우 전원개발사업자 지위를 부여하지 않아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함. 이로 인해 공동접속설비 건설이 지연되거나, 발전사업자들이 개별 접속설비를 건설함으로써 중복 투자와 송전망 난개발 위험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전기사업법」에 따른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의 경우에도 전원개발사업자 지위를 부여하여 공동접속설비 구축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의 효율적인 접속설비 구축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전력망 안정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도결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신향진)

개정안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의 효율적인 전력망 연계를 위해

복수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를 건설하는 특수목적법인(SPC)에 ‘전원개발사업자’ 지위를 부여하고 인허가 일괄 의제 및 토지수용권 등의 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으로,

다수의 개별 선로 중복 구축에 따른 비효율과 난개발을 방지하고, 민간 역량을 활용하여 전력망을 적기에 확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음.

다만, 민간 지분이 포함된 법인에 강제 수용권을 부여하는 사안인 만큼 특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과, 현행 입지선정위원회 제도를 통해 주민 수용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형동)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7. 기타 사항

없 음